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일: 2017. 4. 21

2. 개정 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제 18 조 (약관변경) ①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은행은 그 내용을 서면, 전자우편, 휴대폰 문자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. ③ 제1항의 게시물 또는 제2항의 통지에는 "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건으로 본다."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니다. ④ 이용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은행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	제18조(약관 변경)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(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)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.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“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.”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,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	호 내용 변경 (표준약관 적용)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